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한신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54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31일

발 의 자: 한 · 신, 김 · 경, 김성준,
김영철, 김원중, 김형재,
남창진, 민병주, 박승진,
박중화, 박칠성, 봉양순,
서상열, 서준오, 송도호,
송재혁, 왕정순, 유정인,
이상훈, 이영실, 이용균,
임규호, 임종국, 정준호,
홍국표 의원(25명)

1. 제안이유

- 재생에너지 확대 및 분산형 전원의 증가로 인해 전력 수급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및 공급 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. 이를 위해 양방향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하여 전력망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전력 수급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.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양방향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·보급 확대를 위한 시장의 역할을 규정하려는 것임.
- 또한 급속충전소 설치의무 주차대수 관련 규정(제7조의4제3항) 중 ‘전체 충전시설’이라는 표현이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, 충전료심의위원회 운영을 비상설로 축소함에 따른 위촉위원 임기 규정, 위원회 회의 개최 등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·보급 규정 신설(안 제7조의2).
- 나. 급속충전시설의 최소 설치의무 주차대수 명시(안 제7조의5제3항제1호 및 제2호).
- 다. 위원회 비상설화를 위해 안전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으로 변경하는 단서 추가 및 위촉위원 임기 규정 수정(안 제9조제1항 및 제3항).
- 라. 당연직 위원을 환경, 에너지업무 관련 실·본부 국장에서 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(안 제9조제2항제1호).
- 마.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장 회의 소집 내용을 삭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도록 변경(안 제9조제4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를 각각 제7조의3부터 제7조의6까지로 하고,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·보급) 시장은 양방향 충전(충전과 방전을 말한다)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·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의5(충전의 제7조의4) 제3항제1호 중 “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10이상”을 “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 수량 최소치의 100분의 10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전체 충전시설”을 “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 수량 최소치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·운영하고, 회의 종료가 함께 자동 해산된다.

제9조제2항제1호 중 “환경, 에너지업무 관련 실·본부 국장”을 “위원회 담당 부서의 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”을 “위원회의 회의는”으로, “개의회고”를 “개최하고”로 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·운영기간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의2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7조의2(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·보급) 시장은 양방향 충전(충전과 방전을 말한다)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·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
<u>제7조의2 · 제7조의3 (생 략)</u>	<u>제7조의3 · 제7조의4 (현행 제7조의2 및 제7조의3과 같음)</u>
<u>제7조의4(충전시설 설치) ① · ② (생 략)</u>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급속충전시설의 설치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개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 1. 영 제18조의5제1호에 따른 공공이용시설: <u>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10이상</u> 2. 영 제18조의5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건물과 주차장: <u>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10 이상</u>	<u>제7조의5(충전시설 설치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u> ③ ----- ----- ----- 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<u>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 수량 최소치의 100분의 10 이상</u> 2. ----- ----- <u>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 수량 최소치</u>-----

④ ~ ⑥ (생략)

제7조의5 (생략)

제9조(충전료심의위원회) ① 시장은
충전료 산출 등 요금 결정에 관한
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
시충전료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
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단서 신설>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당연직 위원: 환경, 에너지업무
관련 실·본부 국장

2. (생략)

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
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
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
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· ⑥ (생략)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6 (현행 제7조의5와 같음)

제9조(충전료심의위원회) ① -----

-----, 다만, 위
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
다 구성·운영하고, 회의 종료
가 함
께 자동 해산된다.

②

1. ----- 위원회 담당부서의
장

2. (현행과 같음)

③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
위원회 구성·운영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-----

개최하고-----
-----.

⑤・⑥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의2 (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·보급)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-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의2 (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·보급)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의 규모 및 대상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병준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 계 분 석 관 김지혜

☎ 02-2180-7952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